

1. 개정이유

기상사업 등록 및 기상예보사·기상감정사 면허의 관련 서식에 나타난 운영 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분실·훼손 외의 경우에도 기상사업 등록증을 재발급할 수 있도록 재발급 사유를 확대함(안 제2조제4항).
- 나. 기상사업의 폐업 신고 시 기존 사업자 등록증을 분실하여 반납할 수 없는 경우 비고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 다. 면허증 반납 서식 신설 등 기상사업 및 기상면허 관련 서식을 정비함(별지 제3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9호의2서식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협의 전

환경부령 제 호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분실 또는 훼손하여”를 “분실·훼손 등으로 인하여”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4조의2 중 “등록증”을 “등록증을 첨부”로,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를 “해당한다. 다만, 분실로 등록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기재한다)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면허의 반납) 영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면허증 반납 신고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과 같다.

별지 제3호서식 제4호 중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사업자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제3호 중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하고, 같은 서식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서식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2서식]

기상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무소	상호(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재발급 신청사유	[] 기상사업 등록증 분실 [] 기상사업 등록증 훼손 [] 기타()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기상사업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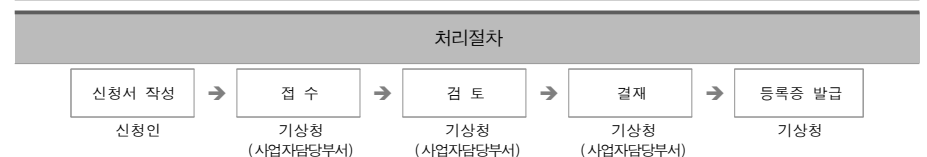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상청장 귀하

첨부서류	기상사업 등록증(훼손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종질지(80g/㎡)]

[]기상에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
[]기상장비업
[]폐업
[]휴업
[]영업재개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무소	상호(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신고내용	[] 휴업일자 [] 폐업일자 [] 영업재개일자		비고		
	[] 휴업사유 [] 폐업사유 [] 영업재개사유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 기상예보업 [] 폐업
[] 기상감정업 [] 휴업 을(를)
[] 기상컨설팅업 [] 영업재개
[] 기상장비업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상청장 귀하

첨부서류	기상사업 등록증(폐업신고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다만, 분실한 경우 비교란에 기재)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신청인	→	접 수 기상청 (사업자담당부서)	→	검 토 기상청 (사업자담당부서)	→	결재 기상청 (사업자담당부서)	→	신고수리 기상청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종질지(80g/㎡)]

[]기상에보사
[]기상감정사
면허증 반납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면허종류		[] 기상예보사 [] 기상감정사			
면허번호		(발급일:)			
반납사유			비고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기상에보사, []기상감정사 면허증 반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기상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기상예보사 면허증(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분실한 경우 비교란에 기재) 1부. 2. 기상감정사 면허증(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분실한 경우 비교란에 기재)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종질지(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기상예보업 등의 등록) ① ~ ③ (생략) ④ 기상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기상사업 등록증을 분 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 받아 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 2서식의 기상사업 등록증 재발 급 신청서에 기상사업 등록증 (훼손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 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제2조(기상예보업 등의 등록)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분 ----- 분 실·훼손 등으로 인하여 ----- ----- ----- ----- ----- -----제출해야----- -----.
제4조의2(휴업·폐업 등의 신고) 법 제6조의2에 따라 기상사업자 가 휴업·폐업 또는 휴업 후 영 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휴업·폐업· 영업재개 신고서에 기상사업 등 록증(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기상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2(휴업·폐업 등의 신고) ----- ----- ----- ----- ----- 등 록증을 첨부----- 해당한다. 다만, 분실로 등록증 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 고란에 기재한다)하여 기상청장 에게 제출해야 ---.
<신설>	제10조의2 (면허의 반납) 영 제16 조의2제2항에 따른 면허증 반납

신고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과
같다.